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701-061769, 2CA-1703-094822(병합) 구거 편입토지 보상

- 신 청 인
1. ○○○
○○ ○○시 ○○구 ○○면 ○○리 149-25
 2. ○○○(○○○○○○○○○종중)
○○ ○○시 ○○구 ○○면○○리 28
 3. ○○○
○○ ○○시 ○○구 ○○면 ○○리 24-4

피신청인 ○○○도 ○○○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160-32 소재 구거 시설물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 토지(같은 리 42-1 전 1,023m², 같은 리 산11-32 임야 2,887m², 같은 리 42-6 답 53m²)의 일부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6. 5.

위원 ○○○

위원 ○○○

위원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1은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 ○○ ○○시 ○○면 ○○리 160-32 구거 1,180㎡(이하 '구거부지'라 한다)에 설치된 구거 시설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이 신청인 1 소유인 같은 리 42-1 전 1,023㎡(이하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0. 19.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7㎡가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 2 소유인 같은 리 산11-32 임야 2,887㎡(이하 '민원 토지 2'라 한다)와 신청인 3 소유인 같은 리 42-6 답 53㎡(이하 '민원 토지 3'이라 하고, 민원 토지 1·2·3을 합하여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일부도 이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민원 시설물은 1996년 ○○○관리공단 이 ○○리조트 건설시 기존 구거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주거나 점유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관리공단)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년경 ○○○○○관리공단이 구거부지 위쪽에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거부지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우.오수 배출 등 이 민원 시설물의 사용자인 ○○○○관리공단이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 민원 토지의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관리공단)은 ○○○○리조트를 1993년 1월경부터 1996년 6월 경 까지 건설하였는데 ○○○○리조트 공사과정에서 배수로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살펴보면, 민원 토지 1은 1998. 1. 2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민원 토지 2는 197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신청인 2)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며, 민원 토지 3은 1980.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시설물이 소재한 구거는 1975년 피신청 인이 시행한 ‘○○○ ○○○○ ○○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생성되 었다. 이후 폭 3~4m, 길이 800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민원 시설물을 언 제, 누가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 인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과 인근 주민들은 ○○○○관리공단이 구거부지 위쪽에 ○○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1996년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한편, 구거부지는 1997. 1. 23. 국가(○○○○부)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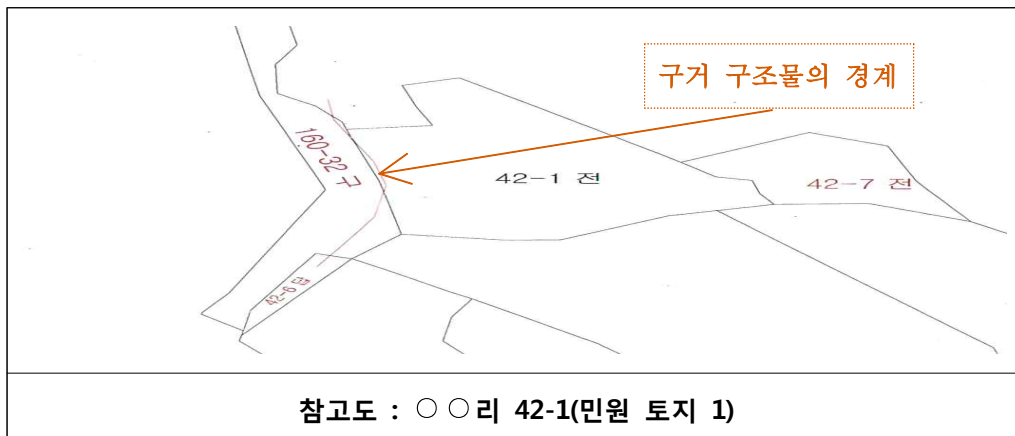
다. ○○○○리조트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건설되었고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며 생성된 구거부지의 시작점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 민원 시설물은 경지정 리지역의 농수로 역할과 ○○○○리조트 및 인근 소규모 공장, 농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우.오수를 지방하천까지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민원 시설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구거부지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가 신청인 등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신청인 1은 2016. 10. 26. 이 민원 시설물이 민원 토지 1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 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시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

○○○○관리공단이 ○○○○리조트 배수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민원 토지 1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1. 4. 관련 민원을 ○○○○○관리공단에 이송하였으나, ○○○○○관리공단은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관리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체 종결하였다.

마. 이에 신청인 1은 2016. 11. 23. 1996년경 ○○○○○관리공단이 ○○○○리조트 배수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민원 토지 1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2016. 10. 19. 실시한 경계복원측량결과 확인하였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도와달라는 진정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1이 2016. 10. 19.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를 토대로 이 민원 시설물의 지적도상 현황을 확인하고 2016. 12. 12.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민원 시설물의 민원 토지 1 점유면적이 경미(7㎡)하여 점유 부분을 분할 및 매수 보상하거나 민원 토지 1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점유현황 도면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2016. 12. 12. 신청인 1에게 안내하였다.



사. 그런데, 신청인 1과 신청인 2, 3은 이 민원 시설물의 점유 부분 보상 또는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2017. 1., 10. 2017. 3. 14.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 민원 시설물 설치현황 >	< 신청인들 토지 편입현황 >
	 <p data-bbox="831 506 1214 539">① 신청인 1 편입 토지 약 7㎡</p>  <p data-bbox="831 768 1246 801">② 신청인 2 편입 임야 약 132㎡</p>  <p data-bbox="831 1043 1246 1077">③ 신청인 3 편입 토지 약 23㎡</p>

아. 2017. 2. 10. 신청인들과 ○○○○리조트 관계자, 피신청인 국유지 담당자, 한국 국토정보공사 ○○시지사 지적측량담당 입회하에 이 민원 시설물의 점유현황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국유지 담당자와 천안시청 기록물보관소를 방문조사 하였으나, ○○○○리조트 건설 당시 이 민원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리공단 또한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문서 등은 남아있지 않으며, ○○○○리조트 건설 당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당초 구거부지는 우수 등 자연발생적인 소량의 우수흐름을 관장하는 폭이 협소한 배수로였으나, 1996년경 ○○○○관리공단이 ○○○○리조트 조성 시 다량의 우.오수 배수로 확보가 필요하여 구거부지의 배수로를 확장하고 영구적인 사용을 위해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19○○.○○. ○○리조트 개

장), 배수로 확장공사 시행시 공사 구간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대해 ○○○○○관리공단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있고 우.오수 배출 등 이 민원 시설물의 주요 사용자가 ○○○○○관리공단이므로 ○○○○○관리공단이 편입 토지 보상이나 유지·관리 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용승낙서를 받은 주체 및 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1항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구거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공공복리의 원칙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나. 판단 내용

- 1) 먼저,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시설물의 일부가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이 민원 시설물은 경지정리지역의 농수로와 ○○○○리조트 및 인근 소규모 공장, 농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우·오수를 지방하천까지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구조물인 점, 공유수면(구거)의 관리청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측면상 점유 부분의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유 부분에 대한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2) 다음으로, 이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시설물은 대부분 국유지인 구거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수면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점, 이 민원 시설물은 폭 3~4m, 길이 800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경지정리지역의 농수로와 ○○○○리조트 및 인근 소규모 공장, 농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우·오수를 지방하천까지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반영구적으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은 ○○○○관리공단에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자

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공단은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제57조는 공유수면 관련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일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끝으로, 이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일부의 보상 주체에 대해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4조 제2항은 시장·군수 등을 공유수면의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관리공단이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민원 시설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책임을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0년대 중반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민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공단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리공단이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조트단지 밖에 위치한 이 민원 시설물의 관리 권한은 리조트 사용승인 시점에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물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일부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